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부장관이 수립하던 ‘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’과 ‘광역상수도·공업용 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’을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으로 확대개편하고, 지자체가 수립하는 ‘수도정비기본계획’을 ‘수도정비계획’으로 하여 계획간 위상 정비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(법률 제18750호, 2022.1.11 공포, 2022.7.12 시행)됨에 따라, 개정된 수도법 체계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제출 수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또한,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 위임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(수도법 제62조) 권한에 맞추어 관련 과태료 부과권도 위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‘수도정비계획’ 명칭 변경 및 인용조항 개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 및 제67조)

- 1) 수도법에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수도계획의 명칭을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으로 정하고,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의

명칭을 ‘수도정비계획’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‘수도정비
기본계획’을 ‘수도정비계획’으로 명칭을 변경

2)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 순서가 조정되었으므로, 시행령의
인용조항 중 “법 제4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 개정

나.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의견청취 수단 개정(안 제11조의2)

1)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 서면을
포함한 전자적 방식 등 모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

다.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 권한 위임(안 제67조제2항)

1)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, 건강진단, 운영요원 교육 등을 이행하지
않은 경우 유역(지방)환경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 위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)”을 “(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)”를 “(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5조제3항”으로, “수도정비기본계획”을 “수도정비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)”를 “(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수도정비기본계획”을 각각 “수도정비계획”으로, 같은 항 중 “법 제4조제5항”을 “법 제5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4항 중 “서면으로”를 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”로 한다.

제6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5조제3항”으로, “수도정비기본계획”을 “수도정비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수도정비기본계획”을 “수도정비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

이 신설한다.

12. 법 제87조제4항제4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·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)

제6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)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.	<삭 제>
제6조(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승인 사항)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10. (생략)	제6조(수도정비계획의 변경 승인 사항) 법 제5조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 검토)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한국환경공단”이라 한다)이나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“한국수자원공사”라 한다)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	제7조(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) ----- 법 제5조제3항----- 수도정비계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(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

특례) ①법 제4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)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말한다.

1. (생략)
2. (생략)

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,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·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

----.

제8조(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)

①법 제5조제6항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정하는 시장·군수가 수도정비
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하여
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
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
조제5항을 준용한다.

제11조의2(주민의 의견청취)

①~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라 공고·공람된
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
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
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
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군수·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
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
위탁) ① (생략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
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
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
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
한다)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
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

----- 수도정비
계획-----.

③-----
----- 수도정비계획-----
----- 법 제5조
제5항-----.

제11조의2(주민의 의견청취)

①~③ (생략)

④-----

----- 서면 또는 전자
적 방법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
수 있다.

제6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
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법 제5조제3항-----

수도정비계획-----

변경승인. 다만,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·군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외한다.

2. ~ 11. (생략)

<신 설>

③・④ 삭 제

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
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
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
립을 위한 조사·연구

2. ~ 10. (생략)

⑥ ~ ⑧ (생략)

수도정비계획

2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법 제87조제4항제4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·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)

⑤ _____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

2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이용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21